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44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 8. 6.
4. 회부일자 : 2019. 8.13.

### II .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으로 학원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70호, 2018.12.18. 일부개정, 시행 2019.12.19.) : 제 3조의3제1항 및 별표2(학원의 교습과정)

### III . 주요내용

1.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규정 (안 별표 3 및 별표 4)

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기존의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인 평생교육직업교육학원의‘컴퓨터’과정과 동일하게 규정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별표4와 같음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41. 전자상거래,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u>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나.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애견 훈련’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기존의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인 ‘애견 미용’과정의 시설기준(실습실 70㎡ 이상)에 추가로 교습과정상 필요한 최소한의 교구(10종 이상)만을 추가로 구비하도록 규정

-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별표4와 같음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 미용· <u>훈련</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u>애견 미용</u>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 2) <u>애견 훈련</u> <u>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u>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2.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식음료품'교습과정의 예시 추가사항 등을 학원 시설 및 설비·교구 기준에 추가 (안 별표 3 및 별표 4)

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중 '식음료품' 과정의 예시에 추가된 '조리, 제과·제빵'과, 교습분야 및 교습계열 중 '인문사회'에 추가된 '자연'을 각각 '(별표3) 학원의 시설규모'기준과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추가해 상위법령과 일관되게 규정함

- 평생직업교육학원 '식음료품' 교습과정의 예시(별표3, 별표4)

· 바리스타, 소몰리에 등 →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몰리에 등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분야 및 교습계열 '인문사회'(별표3)

· 인문사회 → 인문사회·자연

## IV. 참고사항

### 1. 관계법규 : [별첨 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3. 협의 : 학원 관련 단체(학원연합회, 교습소연합회 등), 교육부,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청 관련 부서(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등과 협의 완료

### 4.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입법예고 : 2019.4.18.~5.7., 재입법예고 : 2019.5.10.~5.30.)

- 교육규제심사 : 교육규제 심의 결과 통보서 [별첨 4]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5]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별첨 6]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844호로 제출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과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지난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에 대한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원법 시행령」은 동 개정을 통해 별표 2 중 ‘학원의 교습과정’에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애견 훈련’ 과정과 ‘식음료품’ 교습과정의 예시에 ‘조리, 제과·제빵’ 과정을 각각 신설·추가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분야 및 교습계열 중 ‘인문사회’에 ‘자연’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sup>1)</sup>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학원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의 규정에 따라<sup>2)</sup> 신설·추가된

1) 학원의 교습과정(학원법 시행령 [별표2] 발췌)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교습과정과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에 대한 의견(안 별표 3, 안 별표 4)**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동 조례 제5조제1항은 “「학원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3)</sup>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정보교과에 속하는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습교과교습학원	정보	정보	<b>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b>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제3조(학원시설)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장(체육시설)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의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 [별표 3] [별표 4]는 관계법령 참조

교육활동(이하 “정보교과”)’ 교습과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별표 3에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학원의 시설 규모 [안 별표 3]**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정보	정보	<u>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u>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정보교과 교습과정 신설에 따라 정보교과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기존 교습과정 중 가장 유사한 ‘컴퓨터’ 계열의 교습과정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교과 교습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안 별표 4]**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41. 전자상거래,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u>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먼저 정보교과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고 교과목이 새롭게 개편 또는 신설된 것으로<sup>4)</sup>

지식·정보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등 정보문화소양을 갖추며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

4) 초등학교 : 교과(실과) 내용을 SW기초소양교육으로 개편 / 중학교 : 정보교과 신설 / 고등학교 : ‘정보’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

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및 네트워크 컴퓨팅 기반 환경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입니다.

- 이런 점에서 정보교과의 교습과정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컴퓨터(정보 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교습과정과 유사 또는 포괄하는 교습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정보’ 과목의 내용체계(영역)가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추상화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실무 위주의 컴퓨터 계열 교습과정과 달리 정보문화소양, 창의적 컴퓨팅 사고력, 공동체에서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을 기르기 위한 교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도 ‘컴퓨터’ 교습과정과 ‘정보교과’ 교습과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별표 4에 별도로 ‘정보교과’ 교습과정을 명시하여 명확히 구분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표3】 ‘정보’ 과목의 내용체계(영역)<sup>5)</sup>**

내용체계(영역)	주요내용
정보문화	정보사회의 특성과 진로,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 사이버 윤리
자료와 정보	자료의 유형과 디지털 표현, 자료의 수집, 정보의 구조화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추상화(문제 이해, 핵심요소 추출), 알고리즘의 이해 및 표현, 프로그래밍(입력과 출력, 변수와 연산, 제어구조, 프로그래밍 응용)
컴퓨터시스템	컴퓨팅 기기의 구성과 동작 원리, 피지컬 컴퓨팅(센서 기반 프로그램 구현)

5) 서울시교육청 고시 제2017-5호(2017.3.13.)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정보)」  
 서울시교육청 고시 제2017-5호(2017.3.13.)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정보)」

- 이와 함께 정보교과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은 정보교과와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인 컴퓨터 계열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학원법」 제8조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규정과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의제1항 및 제2항의 교습과정의 분류 및 등록 규정에 따라 정보교과와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sup>6)</sup>

**다. ‘애견 미용·훈련’ 교습과정과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에 대한 의견(안 별표 3, 안 별표 4)**

- 동 개정조례안은 ‘애견미용’ 교습과정에 ‘훈련’을 추가하여 ‘애견 미용·훈련’ 교습과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애견훈련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 먼저, 안 별표 3의 ‘애견 미용·훈련’ 교습과정은 기존 ‘애견 미용’ 교습과정에 ‘훈련’을 추가하여 명칭을 개정한 것으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 학원의 시설 규모 [안 별표 3]**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향송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6)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표5】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안 별표 4]**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 미용· <u>훈련</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 2) <u>애견 훈련</u> <u>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u>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기준을 기존의 교습과정 중 가장 유사한 ‘애견 미용’ 과정의 시설기준(실습실 70㎡)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기준을 새롭게 추가하여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애견 훈련’ 교습과정은 애견과 사람이 함께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애견 훈련의 목적에 따라 익혀야 하는 훈련 기술이 다르며 견종마다 그리고 개의 성향에 따라 훈련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할 것이며,

‘애견 훈련’의 목적, 기술, 방법, 견종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설·교구<sup>7)</sup> 또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특정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애견 훈련’과 유사한 교습과정인 ‘애견 미용’의 시설면적을 갖 추도록 한 것과 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를 10종 이상으로<sup>8)</sup> 하여 학

7) 애견 훈련 교구 : 목줄, 리드줄, 체인, 초크체인과 흘치기 줄, 몸줄, 안면줄, 먹이 장난감, 클릭커, 소변패드, 경계 훈련을 위한 ‘침대’, 동작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목줄’, 불안감 진정시키는 ‘셔츠’, 사고 예방을 위한 ‘허리 램’, 탈취제, 간식(개들이 집중하고 수행하도록 동기 부여를 해 줄 유혹적인 향과 맛이 좋은 훈련용 간식), 배변 봉투, remote Trainers, 방수된 ‘기지귀와 배꼽 패드’, ‘제어 기능’ pet Convincer II, 헤드칼라 ‘HALTI’ 등등

원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구를 구비토록 한 것은 학원설립·운영자들의 부담 완화 및 학원 운영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6】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실습실 등 면적 기준**

구분	교습과정
990m <sup>2</sup>	농림(임업, 원예)
390m <sup>2</sup>	농림(동물 사육)
350m <sup>2</sup>	중기운전
225m <sup>2</sup>	방송
180m <sup>2</sup>	조선
150m <sup>2</sup>	자동차(정비, 중기)
105~120m <sup>2</sup>	전기(재료,기기,공사), 항공, 해양, 안전관리, 영화, 모델, 간호조무사, 독서실
90m <sup>2</sup>	기계, 귀금속 가공, 화공 및 세라믹, 통신, 전자, 토목, 건축, 광업자원, 농림(동물 박제·모피피혁), 에너지, 환경,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항공승무원, 영상, 음반, 연기
80m <sup>2</sup>	음악, 국악, 실용음악(성악), 미술
75m <sup>2</sup>	무용, 댄스
<u>70m<sup>2</sup></u>	국토개발(저경, 도시계획, 지적), 공예, 교통,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속기, 전산회계,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b>애견미용</b> , 장의, 호스피스,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로봇, 출판, 캐릭터, 관광, 펜글씨, 주산, 서예, 도예, 만화, 화술, 웅변, 바둑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학원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으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 별표 4의 마술 교습과정은 교구를 특정하기 어려워 ‘마술교구 10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61.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7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b>마술 교구 10종 이상</b>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참고로 교육부는 신설된 ‘애견 훈련’ 교습과정도 종전의 애견미용학원에서 시설면적을 추가로 갖출 필요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애견 훈련’을 별도의 교습과정으로 규정해 시설면적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9)

**라. 그 밖에 사항에 대한 의견(안 별표 3, 안 별표 4)**

○ 그 밖에 안 별표 3과 별표 4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식음료품’ 과정의 예시에 ‘조리, 제과·제빵’ 과정을 추가하고, 교습분야 및 교습계열 중 ‘인문사회’에 ‘자연’을10)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학원의 교습과정’ 개정 사항의 명칭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법 시행령				조례 개정안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b>종류</b>	<b>분야</b>	<b>계열</b>	<b>교습과정</b>	<b>종류</b>	<b>분야</b>	<b>계열</b>	<b>교습과정</b>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응용 기술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응용 기술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 ·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 ·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부			
				<b>교습과정</b>	<b>시설·설비 및 교구</b>		
				23. 식음료품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 타, 소믈리에 등)	현행과 같음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9.12.19.)에 따른 시·도 조례 개정 안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133, 2019.5.2.)

10) 가. 인문사회 계열 :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필두로 하여 인간 사회의 문화와 사회 질서 및 역사와 그 문화에 따른 언어학을 탐구 및 연구하는 교육과정을 의미 함.

나. 자연계열 : 과학(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등의 자연 질서와 논리학에 대하여 탐구 및 연구하는 교육과정을 의미 함. [출처 : 위키백과]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3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19.] [대통령령 제2937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8. 12. 18.>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기타	특수교육 기타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매,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

	관리	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옹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9호, 2018. 1. 4., 일부개정]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장(체육시설)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의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 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7.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8. 1. 4.>

②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및 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3. 식음료품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조리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라) 실습대 8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아)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자) 냉장고(1,000L)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소믈리에 가) 진열대 4대 이상 나) 조주대 4대 이상 다)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4) 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미용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2) 욕조 2대 이상 3) 드라이어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1.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마술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